
2023학년도 전주문학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연수자료

2023. 3. 29.

전주문학초등학교

목 차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교권보호)	4
3. 청렴교육(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수수)근절 안내	6
4. 인권교육	8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0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1
7.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 교육	12
8. 장애인식개선교육	14
9. 다문화 이해 교육	15
10. 감염병예방교육(코로나19 감염병 관리)	16
11. 성폭력예방교육	18
12. 가정 내 양성평등 교육	19
13.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0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가.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폭력(따돌림)

나.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2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 심리상담 및 조언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일시보호(경찰 동행 보호 등)
- 학급 교체(희망할 경우)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 학교폭력 대응 방안

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나.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117, #117(문자), www.safe182.go.kr)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성인물까지..변종 룸카페 적발

2023-02-28 11:10 | 수정 2023-02-28 11:10 MBC 구나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변종 룸카페 3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대에 위치한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들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데,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까지 변종 룸카페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학 교 폭 력

완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을구

발행처 :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팀 (063-280-0115, 010-7174-4841)

“학교폭력”이란 ?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조 1항).

학교폭력 현황



(2022 서울경찰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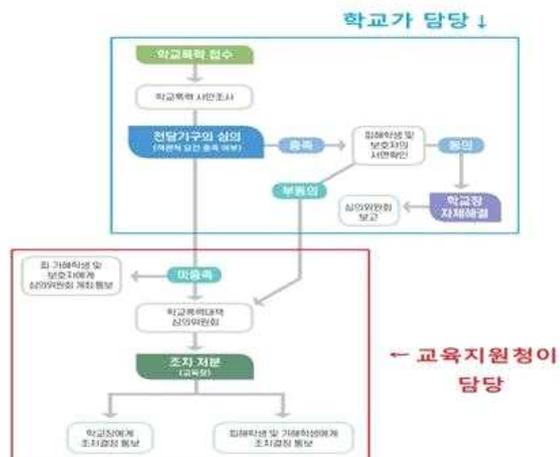
- 5년간 청소년범죄(학폭·소년범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코로나 유행감소에 따른 대면활동 증가로 신고건수와 검거인원수가 모두 증가함.
- 학교폭력 범죄유형의 변화
 - 폭행·상해, 금품갈취 등 전형적인 학교폭력인 물리적폭력은 감소(폭행·상해 -47.3% 금품갈취-11.6%) 하고, 모욕·명예훼손 등 정서적폭력과 성폭력(모욕·명예훼손 +72.3%, 성폭력+28.5%)은 큰 폭으로 증가함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 저연령화와 집단화, 초등학생 및 여학생 폭력의 증가
- 가해학생들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
- 특정 학생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 은밀한 집단적 따돌림이나 폭력적 언행
- 특별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
- 인터넷을 통한 비방이나 욕설 등 사이버 폭력 증가

학교폭력 대응하기

- ‘쌤쌤이란 것 없다’
 -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해서 나의 잘못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맞받아치지 말고, ‘도망가’거나 ‘신고’ 하라 가르쳐주세요!
- 직접 해결하지 않기
 - 내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상대 학생을 찾아가지 않기 ※2023.2.22.부산지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학교폭력 처분 절차 알고있기!



-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소년법상 처리절차)
 - 만 10세 미만인자 ㄱ 형사처벌 + 보호처분 불가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ㄱ 형사처벌 불가 + 보호처분 가능
 - 만 14세 이상(범죄소년)
 - ㄱ 형사처벌 가능 (벌금,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 1366(휴대폰은 지역번호+)
- 전북해바라기센터 : 278-0117
(성폭력피해자 수사,의료,상담통합지원)
- 전주 정신건강복지센터 : 273-6995(자살예방)
- 전북 굿네이버스 : 283-1391(아동보호전문기관)
- 학교폭력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7

가. 교권보호의 이해

큰 거

-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 **교권(敎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학부모나 학교 외부 인사가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교권침해 예방 자료

●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 교권침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 교권침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교사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욕설 글을 남기는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10.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허락없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 음란한 영상, 사진 배포
·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게시
· 공무실·불안감을 주는 문자
주치해 발송**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교육부**

☐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감사결과처분기준(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됨.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주문학초등학교는 교육 가족 및 학부모님과 서로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 전북교육 실천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붙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문

“불법찬조금 및 촌지” 없는 학교!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접대를 포함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에 해당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 2016. 9. 28.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1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가.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유 잔을 옆질렀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도록 하죠.” 혹은 “컵이 옆질러졌군요. 저기 휴지가 있어요.”라고 이야기 해줄 뿐이다. 손님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손님에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양해와 존중, 그리고 정중함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예절 바른 사람도 아이들 앞에서는 입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 할 때 심한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보자.

나.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뿐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효과적인 것은 정확하고 짧게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2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가.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아주 바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충분히 바쁜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마련한다.

나.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문과 충고를 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 줄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이는 더욱 잘 표현하게 된다.

다.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즐겁거나 기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그것 자체로 받아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들은 “다 큰놈이 훌쩍 거리긴!”, “어린애처럼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겠구나!”, “친구와 헤어지는 일은 참 슬픈 일이야.” 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준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안도감을 느낀다.

라.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가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한다고 “정말 죽이고 싶겠구나.” 혹은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려는 건 아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마.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
(계속 고함을 치며 발버둥치는 아이)
“(큰소리로) 잠깐 네 기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생각났다. 잠시만 기다려.”
(종이와 싸인펜을 가져온다)
“이 종이에다 네가 화난 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렴.”
(아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린다)
“아! 네가 정말 화가 났구나 더 그려볼래.”
(아이, 이번에 더 크게 그린다)
“저런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아이 기분이 풀려서) “이젠 기분 좋은 모습을 그릴게요.”

바. 아이들이 스스로 비난하는 것에 동조도 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말 그대로 “너는 너를 바보같이 느끼는구나.” 등으로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단다.”라는 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1 한국의 자살 실태

- 연간 자살자 15,413명(통계청, 2009) .평균 42명/일 자살
- OECD 국가 중 전체 자살률 1위(청소년 자살 446명/년)

2 청소년 자살의 특징

- 치명적인 자살률은 성인기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
- 남을 조정하려는 의도나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보복으로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 순간적으로 행해짐
- 용이하고 치사도가 높은 자살 수단 선택 (추락, 투신으로 인한 자살률 97%)
- 현실의 순간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단순한 생각

3 자살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반드시 자살을 시도하기 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의도를 암시함
- 물건 정돈 : "내 물건들을 모두 주어버렸다", "나의 일은 모두 끝났다"
- 신변정리 :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 전달
"안녕, 그 동안 고맙다", "오늘 내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최근 친한 친구들을 방문했다."
- 단정치 못한 외모 (의욕상실, 생기 없는 얼굴, 남을 의식하지 않는 복장)
- 받았던 상장(품), 소중히 간직한 물건 버리기, 타인에게 주기
- 분노나 우울한 표정에서 평온한 표정과 행동으로의 급격한 변화

4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

- 왕따나 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두려움, 열등의식)
- 심리적 내성이 약한 청소년(입시실패, 성적하락)
-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강박증, 정신분열증 포함)
- 돌아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부모이혼, 성적학대, 경제적 빈곤 등)
- 알콜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적개심, 분노조절 능력의 부족)
- 자살시도 경험 혹은 자살과 관련된 가족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자살환경)

5 학교의 자살 예방 대책 및 사후 조치

- 가. 학생자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 활동의 강화
-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학교 밖 연계 시스템 구축
 - 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자살예방 교육
 - 긍정적 마인드 제고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풍토 조성
 - 전문 상담인력을 학교에 배치(담임-학생-학부모 연계 상담활동 강화)
 - 학교 자체적으로 인성교육 강화 및 건전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 또래(친구)상담자 양성의 활성화
- 나. 자살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 응급, 구명조치(119,1339), 사건현장 보존(112)

◎ 자살에 관한 도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상담 전화

한국생명의 전화	www.lifeline.or.kr/1588-9191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suicideprevention.or.kr
사랑의 전화	www.counsel24.com/1566-2525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739-2000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동

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나. 가정폭력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다.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라.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일방적인 폭력 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마.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

의미	목적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초·중·고등학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대학교	선행교육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별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 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 폐지 등의 행정적 조치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A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 성과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이 얼마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신뢰하며 지지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학부모님께서서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수업공개의 날, 학부모상담) 및 다양한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의 유형으로는 일반학급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공부하는 완전통합, 일부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시간제 통합으로 나뉩니다.

2 통합교육의 긍정적 효과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물론 일반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①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기술 습득 ② 체험학습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 기회 제공 ③ 분리하여 교육할 때 느낄 수 있는 소외감 해소 ④ 생활연령에 맞는 다양한 주제 학습
일반 학생	① 미래 사회에 적합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계 시민적인 태도 습득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함양 ③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④ 인권 감수성 향상의 기회 제공

3 통합교육 관련 질문

Q&A	<p>1. 장애 학생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 장애 학생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규칙이나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들을 배우며, 사회에 나갔을 때 지켜야 하는 규범들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p> <p>2. 자녀가 장애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 학생이 스스로 해내기 어려워할 때 도와주라고 지도해주세요. 장애 학생에게 말을 할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장애 학생을 도와준 일을 가정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p>
-----	--

1 다문화 교육이란?

1. 다문화 교육이란?

-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가 제도권에서 형성된 것을 다문화라 하며, 이는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언어이다.

2.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정의

- 문화와 인종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상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교육(권순희, 박상준, 이경한, 정윤경, 천호성, 2010; 박남수, 2007)

3. 다문화 교육의 목표

- 소수자를 위한 배려와 교육의 기회 균등 추구
- 주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시민적 자질 육성
- 지구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량 함양

4.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 문화적 편견극복과 차별을 해소하고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적 소외를 막고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의 이해와 포용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사회에서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그리고 관련자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학교 다문화교육 활동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서종남, 2010)

2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모두에서 요구된다, 이 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학부모들에게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는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이해교육을 통해 그 자녀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한국인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그들 배우자의 한국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 나라의 언어와 문화도 익힘으로써 부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에서 차별이나 갈등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연계 협력하고 조력하여 자연스러운 원적학급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의 완전 복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주요내용	분류	기존	변경
▶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권고 (☆ 권고 단어 추가)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유증상, 권고 단어 추가)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기숙사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일 3회 이상, 1회 10분이상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2 마스크 착용 안내

구분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 착용 의무 수정 (개정 후 사항 추가)	<개정전: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9판>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개정 후 코로나19 감염병 9-1판> 적용시기: 2023.3.20.(월)부터 시행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 [*] 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 ^{**} 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합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교내 코로나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발생상황	학교 대응	학생 및 교직원 대응
유증상자 발생 시	1)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본관 1층 방송실) 2) 보호자에게 연락 후 진료·검사 안내	1)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 (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 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2)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 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 시	1)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2)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1)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통보 사항 입력 2)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 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3)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권고 준수 기간 수칙 준수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4 방역수칙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 잘 지키기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②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5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약 5~7일)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다. 치료, 완치 후 **진료 확인서(또는 진단서,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확인서에 감염성 **질환명, 격리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감염병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다르므로 전문의가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정에서 격리 치료 합니다. (※ 병원 진료 외 외출 금지,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
-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감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생리학적 지식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인간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학급 담임교사의 수시지도, 관련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를 통해 청소년기 올바른 성 판단력을 키워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의 자세

- ①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성교육을 합니다.
- ②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님들도 올바른 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 ③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 ④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왜 했는지 알아보세요.
- ⑤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3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①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보십시오.
- ②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고 있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③ 호의를 베풀다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 둘이 집에 있게 하거나 차를 타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④ 평소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 ⑤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를 사랑함을 항상 알려주세요.
- ⑥ 자녀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갖도록 하며,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폭력 발생 시 부모 대응 절차(우선순위)	부모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 (112)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8시간 이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 방문) • 학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 준다. •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킨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 성폭력 피해 아동을 도와주는 전문기관은?

- ▶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
-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서 (국번없이 117)
- ▶ 전북 해바라기센터 ☎063-246-1375
- ▶ 우리 학교 성(性)고충상담 창구 ☎ 070-4262-7106(보건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이용방법

- ★ 홈페이지 주소 : www.sexoffender.go.kr 접속하여 인증절차 후 조회한다.
- ★ 내용 : 성폭력법, 성범죄자 신상조회, 성범죄 예방법, 피해자 지원, 관련법령 정보를 안내한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2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모든 사람이 고정된 성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습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1)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생활화 되면 자녀가 장차 결혼 후에 평등적인 부부관계를 형성될 수 있습니다.
- 2) 가정에서부터 생물학적 성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면 자녀들이 남녀가 아닌 개인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실천

①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워야 한다.

②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 아이에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남아는 운동과 칼싸움, 여아는 소꿉놀이와 고무줄 등 성에 따라 놀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난감, 학용품을 사줄 때는 부모의 편견 없이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④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콘텐츠를 파악한다.

: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TV,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은 없는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 한다.

⑤ 집안일은 부모가 모두 참여한다.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사와 육아 부분이 가장 크다. 아빠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1 정보통신윤리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말합니다.

2 정보통신윤리의 필요성

- 가. 사이버 공간을 유익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 나.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해줍니다.
- 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 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 관련 범죄를 예방합니다.

3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지 않기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기
- 다. 인터넷에서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지 않기
- 라.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 마.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지 않기
- 바.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하지 말기
- 사.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지 않기. 관련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기

4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할 개인정보의 소중함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나.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관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라.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을 받아 보관하게 합니다.
- 마.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합니다.
- 바.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지도합니다.

5 가정에서 네티켓 지도방법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 나. 온라인상의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논해보고 주변의 조언도 참고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도록 합니다.
- 다.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습니다.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 라.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 마.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현재 성인용 사이트를 차단하고 걸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바.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킵니다.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6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가. 자녀의 학습을 돕는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격려합니다.
- 나. 인터넷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자녀와 협의합니다.
- 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자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살펴봅니다.
- 라. 평소 자녀의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화합니다.
- 마. 인터넷 이외의 자녀의 흥미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 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 학습에 지장이 생길 경우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사.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 아. 스마트폰을 끌 때에는 반드시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자. 자녀와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 차.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설치합니다.
- 카.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 타. 스마트폰 사용 이외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즐깁니다.
- 파.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는 어떤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마음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